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

발의연월일: 2024. 05. 30.

발 의 자:김영배・민형배・김남희

김승원 · 오기형 · 전현희

고민정 · 강유정 · 복기왕

박정현 · 허종식 · 송기헌

김원이 · 염태영 · 주철현

김태년 • 홍기원 • 서삼석

박홍근 · 강훈식 · 김현정

이용선 • 박민규 • 박희승

박선원 • 이훈기 • 정진욱

강준현 · 김성회 · 김남근

정성호 • 이워택 • 유호중

채현일 의원(3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'당원 민주주의'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. '지방자치·분권'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

있음.

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,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. 또 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조,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8호) 및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"을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(이하 "지역당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이상의 발기인으로"를 "이상의,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 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18세"를 "시·도당의 경우에 한정하 고, 18세"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3조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"를 "제 13조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)"로 한다.

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역 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당해 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 역당"으로 한다. 제30조제1항 중 "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시·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·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"를 "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"로 하고,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중앙당: 100명 이내

2. 시·도당: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·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는 수 이내

3. 지역당: 1명 이내

제35조제1항 전단 중 "중앙당과 시·도당"을 "중앙당, 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, "시·도당은 1월 31일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은 1월 31일"로 한다.

제37조제3항 본문 중 "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"을 "읍·면·동별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시·도당"을 "지역당"으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 제47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제1호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시·도당"을 "지역당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당원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입당한 당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당이 창당된 경우 그 당원은 해당 관할 지 역당에도 소속된 것으로 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정당은 수도에 소재	제3조(구성)
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・광역시	
·도에 각각 소재하는 <u>시·도</u>	시·도당
<u>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</u>	(이하 "시・도당"이라 한다) 및
으로 구성한다.	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
	치하는 지역당(이하 "지역당"이
	라 한다)
제6조(발기인) 창당준비위원회는	제6조(발기인)
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	
의, 시·도당의 경우에는 100명	
<u>이상의 발기인으로</u> 구성한다.	이상의, 지역당의 경우에는 20
	명 이상의 발기인으로
	-,
제9조( <u>시·도당</u> 의 창당승인) <u>시·</u>	제9조(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 의 창
<u>도당</u>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	당승인)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	
있어야 한다.	
	,
제13조( <u>시·도당</u> 의 등록신청사항)	제13조(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 의 등
① <u>시·도당</u> 의 등록신청사항은	록신청사항) ① <u>시·도당 및</u>
다음 각 호와 같다.	지역당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 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, 중앙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, 법정당원수에 해당 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 본(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)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#### ③ (생략)

제14조(변경등록) 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 및 제13조(시 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9조(합당) ① • ② (생 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<u>시·도당</u>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신

②
<u>시·도당의 경우에 한정</u>
하고, 18세
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변경등록) ①
제13조
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
<u>청사항)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합당) ① • ② (현행과
같음)
③
<u>시·도당 및</u>
<u>지역당</u>

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 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·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 을 하여야 한다.

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·도당은 소 멸된 것으로 본다.

⑤ (생략)
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7 제한)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 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시・ 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 · 도당별로 중앙당이 정 한다.

<신 설> <신 설>

<u><신</u>설> ② ~ ④ (생 략) 제35조(정기보고) ① 중앙당과 시 제35조(정기보고) ① 중앙당, 시

시·도당 및 지역당
$\frac{1}{1}$ , $\frac{1}{1}$ $\frac{1}{1}$ $\frac{1}{1}$ $\frac{1}{1}$
<b>4</b>
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
제한) ①
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다음 각
호와 같다.
<u>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
4 74 - 100 - 101
<u>1. 중앙당: 100명 이내</u>
2. 시·도당: 총 100명 이내에
서 각 시·도당별로 중앙당이

- 정하는 수 이내
- 3. 지역당: 1명 이내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u>• 도당</u>	은 매년	년 12	월 31	일	현.	재
로 그	당원~	수 및	활-	동개	황.	을
다음	연도 2	2월 1	.5일( <u>/</u>	시 •	도	당
은 1월	] 31일)	까지	관할	· 선	거:	관
리위원	회에	보고	하여이	} ·	한다	구.
이 경-	우 중잉	당은	당해	연	도.	의
정책추	-진내용	과	コ -	추진	결.	과
및 다	음 연모	<b>로의</b>	주요?	정책	추.	진
계획을	- 중앙	상선거	관리	위원	회	에
보고하	-여야 즉	한다.				

## ② ~ ④ (생 략)

- 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정당은 <u>국회의원지역구 및</u>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<u>시·도당</u>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.
- 제46조(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)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시·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한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

<u>·도당 및 지역당</u>
) FF D 7 AF 0 10 01
<u>시·도당 및 지역당은 1월 31</u> 일
<u> </u>
· 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• ②
(현행과 같음)
③ <u>읍·면·동별</u>
,,,
<u>지역당</u>
·
제46조(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 창당
승인의 취소)
<u>시·도당 및</u>
<u>지역당</u>

정하여야 하며,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한다.

제47조(해산공고 등) 제45조(자진 해산)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.

- 허위로 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 또는 제13조(시 •도당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을 한 자
- 2. (생략)
-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

제47조(해산공고 등)
-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-
<b>.</b>
1
<u>\lambda</u>
<u>도당 및 지역당</u>
2. (현행과 같음)
3

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<u>시ㆍ</u>	<u>지</u> 역
<u>도당</u>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	<u>당</u>
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	
둔 자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